

| 위치              | 오류유형 | 수정 전  | 수정 후  |
|-----------------|------|---|---|
| 167p<br>번호 : 02 | 해설   | <p>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민이 도시·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도시·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?<br/>[2023]</p> <p>ㄱ. 시가지조성구역의 지정 및 변경<br/>ㄴ. 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<br/>ㄷ. 자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<br/>ㄹ.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</p> <p>① ㄱ, ㄴ<br/>② ㄴ, ㄷ<br/>③ ㄴ, ㄹ<br/>④ ㄱ, ㄴ, ㄷ, ㄹ</p> <p>난도 ★★</p> <p>정답해설   ④ 법 제26조 제1항 참조</p> <p>도시·군관리계획 입안에 제1법 제26조 제1항<br/>주민이(8)관련계획을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시·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·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안사람은 도시·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 또는 개발에 관한 사항 (ㄴ)</li> <li>자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자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(ㄷ)</li> <li>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·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중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</li> <li>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·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자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</li> <li>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(ㄹ)</li> </ol> </li> </ol> <p>오답해설   ㄱ. (ㅅ) 시가지조성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(법 제29조 제3항 제3호).</p> | <p>문항 수정</p> <p>④ ㄴ, ㄷ, ㄹ → ④ ㄴ, ㄷ</p> <p>정답해설 : 법령 수정</p> <p>4.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(ㄹ) → 삭제 &lt;2024.2.6.&gt;</p> <p>오답해설 : ㄹ지문 해설 추가</p> <p>ㄹ. (x) 2024.2.6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해당 사항은 주민이 도시·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.</p> |
|                 |      | 수정 사유   | 법령 개정으로 인한 문항, 해설 수정  |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  
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